

##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□ 세부유형 : 선천적 지적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, 진단소견 기재
2. 검사결과지	- <b>임상심리평가보고서</b> :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※ 상기 표준화된 검사 결과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(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, 바인랜드 사회성숙도검사,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, 발달검사(베일리, 덴버 등)) 중 제출 ※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 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, 비언어적 시지각구성 능력검사[시각-운동통합발달검사(VMI) 또는 벤더계슈탈트검사(BGT)]를 추가 시행한 후 추정 지능지수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제출
3. 진료기록지	- 초진 기록(지적장애 진단 시) 및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-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
☞ 추가 안내사항 * <b>임상심리평가보고서</b> -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을 시행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검사결과지 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	
<b>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</b>	
-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, 신경과, 재활의학과, 소아청소년과(신경분과) 전문의	

#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

##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□ 세부유형 : 후천적 지적장애 ※ 노인성 치매는 장애 불인정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후천적 지적장애 발생원인, 지능지수, 진단소견 기재
2. 검사결과지	- <b>임상심리평가보고서</b> :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※ 뇌손상,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는 MRI(자기공명영상 촬영), CT(전산화단층촬영) 등의 뇌영상 자료 추가 제출
3. 진료기록지	- <b>경과기록지</b> :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간의 기록 모두 제출 [입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퇴원요약지 제출] (인지치료 및 인지기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포함) ※ 지적장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 자료 모두 제출
☞ 추가 안내사항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        * <b>임상심리평가보고서</b>                      -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검사결과지                 </div> 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b>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</b> </div>	
-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, 신경과, 재활의학과, 소아청소년과(신경분과) 전문의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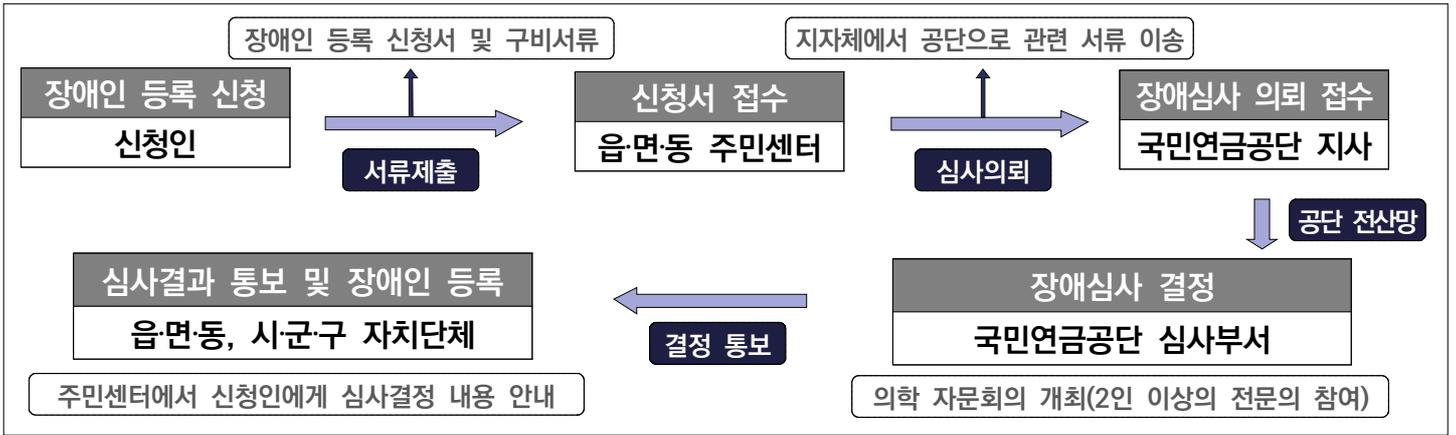
#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

# 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

## □ 장애인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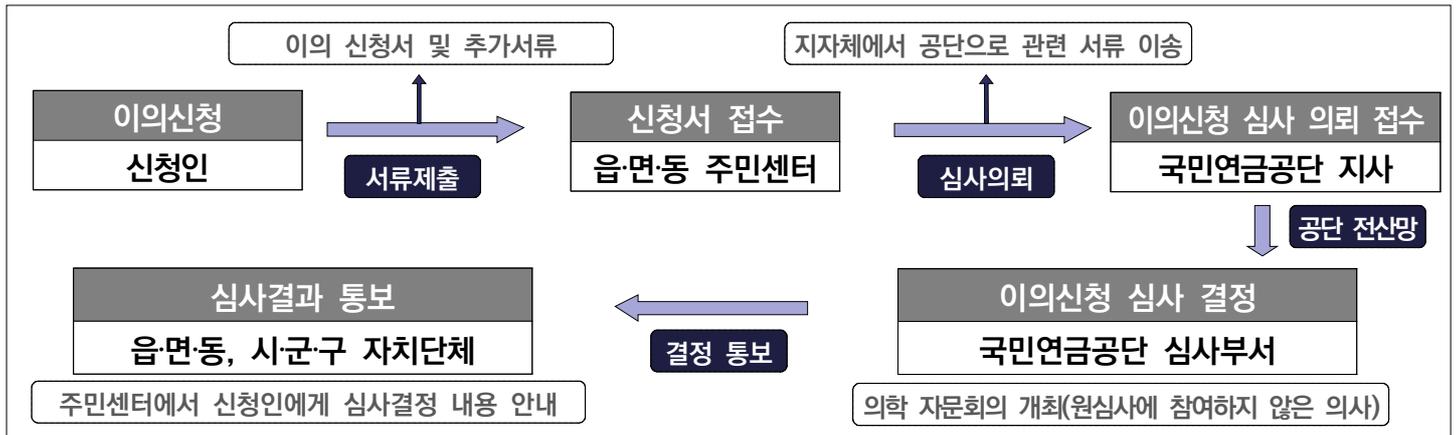
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합니다.



-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, 소견서, 진료기록,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-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- 희망 시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(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)

## □ 이의신청

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, 관련 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.



-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제1항) 합니다.
- '이의신청서' 양식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,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.
-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(시·도 행정심판위원회) 또는 행정소송(행정법원)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
- ※ 단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